

번호	제 호	
연 월 일	2020. . .	

적 합 성 평 가 관 리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정 령 안

제출 연월일	2020. . .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 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 부정성적서 유통 차단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성적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 규정(안 제2조)

- 1) 공인기관은 성적서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인증 분야를 제외한 공인기관은 성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위조·변조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함
- 2)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부정행위 조사 등을 위해 평가 신청서, 발급한 성적서, 평가결과를 보관하도록 함

나. 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를 규정(안 제3조)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부정 성적서의 유통 차단을 위해 성적서 무효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

다.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제14조)
인정 신청, 공고, 인정범위의 확대, 갱신평가, 인정마크, 정기검사, 인정취소 등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사항을 규정함

라.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안 제15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 제1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평가, 사후관리와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세부 처분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적서 발급 등) ① 공인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성적서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인증 분야를 제외한 공인기관은 발급한 성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홀로그램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사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 신청서, 발급한 성적서, 평가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기관은 법 제8조제5항을 따른다.

제3조(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 법 제6조제5항에서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성적서 무효 사실 확인

2. 적합성평가 의뢰자에게 성적서 무효 사실, 성적서 유통금지, 성적서를 제공받은 자에게 성적서 무효 사실의 전파 요구 등을 문서로 통보

제4조(공인기관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2.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신청 분야, 범위
3.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4.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정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등이 공인기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신청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평가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신청서류 평가 또는 현장 평가 결과가 인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 평가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갖춘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결과가 인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인정신청기관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정이 불가함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5조(인정 및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 결과가 관련 제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공인기관으로 인정하고, 공인기관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인정번호
2. 인정일자
3. 공인기관명,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사업장소재지
4. 유효기간
5. 인정분야 및 범위

제6조(인정기준 준수) ① 공인기관은 인정받은 모든 인정범위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인기관은 본점·지점·사무소 등 모든 소재지에 대하여 인정기준에 대한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기관의 보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 ① 공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변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보고사항이 경영시스템의 유지 및 공인기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

에 대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적합사항이 시정 조치 될 때까지 공인기관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기관명,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2. 조직 및 주요 경영진
3. 소재지(본점, 지점, 사무소 등)
4. 경영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
5. 대표자,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6. 인정분야 및 범위 축소
7. 인정기준에 대한 공인기관의 충족 능력에 영향을 주는 기타 사항

② 공인기관은 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의 변경사항으로 인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인정서를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정서(분실시는 제외)
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제8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① 공인기관이 그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기관 휴지(폐지)신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기관이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인기관이 휴지 후 그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 휴지사유 소멸에 관한 증빙자료를 휴지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적 요건에 대하여 인정기준이 지속적으로 충족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의해 해당 기관이 인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업무재개를 승인하고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범위 확대) ① 공인기관은 기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 외에 인정 분야 또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정범위 확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에 따라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서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신청, 평가 및 공인기관의 정기검사 등 인정업무
2. 공인기관 인정업무의 진행 현황 및 이력 관리
3. 공인기관 통계의 생성 및 관리
4. 그 밖에 인정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

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갱신평가) ① 공인기관은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갱신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평가 절차는 법 제8조에 따른 최초인정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2조(인정마크 사용)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인정마크의 도안 및 표시 방법은 시험, 검사, 교정 등 분야는 별표 1, 제품인증 분야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인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성적서, 표시판, 브로셔, 기타 광고 자료 등에 별표 1, 별표 2의 인정마크 도안을 활용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인기관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③ 공인기관이 인정을 받은 분야 및 범위 이내임에도 인정기준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성적서가 인정과 관련이 없음을 성적서에 명시해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인기관은 인정서에 명기된 소재지의 인정범위에 한하여 인정마크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⑤ 공인기관은 인정 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 또는 유효기간의 만료나 업무가 폐지된 경우에는 문서, 광고, 홍보, 판촉 및 해당 업무에 있어 인정마크의 사용 및 인정의 언급을 즉각 중지하고, 해당 문서에서 인정에 관한 문구를 바로 삭제해야 한다.

제13조(정기검사)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공인기관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규 인정 후 1년 이내, 그 이후에는 18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른 갱신평가 이후에는 24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시스템 인증 분야 공인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인기관은 정기검사 1개월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기관이 정기검사 연기를 신청한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공인기관에 대한 정기검사·특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검사 7일전까지 그 사실을 공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인정취소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험, 검사, 교정, 제품인증 등 분야의 공인기관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령하는 경우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인기관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명령, 과징금 처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직원 현황,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2.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3. 교육시설 현황
4. 과정별 운영계획
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등이 영 제11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신청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평가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신청서류 평가 또는 현장 평가 결과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 평가를 위해 자격을 갖춘 평가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결과가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지정신청기관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그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며, 지정을 연장하려는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 관련한 이의제기 또는 불만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교육과정, 강사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갱신평가, 지도, 감독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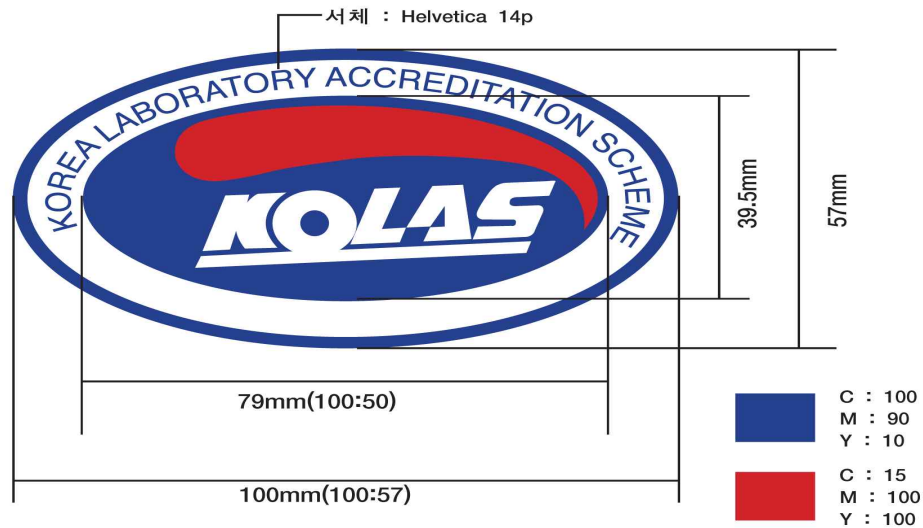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험, 검사, 교정 등 분야 공인기관 인정마크

(제12조제1항 관련)

가. 시험, 검사, 교정 등 분야 인정 로고 도안



나. 시험, 검사, 교정 등 분야 인정마크 도안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메디컬시험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다. 표시 방법

- 1) KOLAS 인정마크는 가항의 규정에 따라 KOLAS 로고에 추가적으로 해당 KOLAS 공인기관의 인정분야와 인정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 2) 인정마크는 항상 원안의 비율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왜곡, 압축 또는 늘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수평 방향으로만 사용하고 회전시키지 말아야 한다.
- 3) 인정마크는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가 인정기구에 의해 인증받았거나 승인되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아야 한다.
- 4) 그 이외 인정마크 표시 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제품 인증 분야 공인기관 인정마크

(제12조제1항 관련)

가. 제품인증 분야 인정 로고 도안



나. 제품인증 분야 인정마크 도안



KAS-P-000

다. 표시 방법

- 1) 마크는 이미지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하며 비례 규정에 따라 정확히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함.
- 2) 마크의 재생은 원칙적으로 매뉴얼 재생자료에 의한 사진제판방식과 슬라이드에 의한 투사복제방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크게 확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리드 스케일 비례규정에 따라 정확히 제작되어야 함.
- 3) 그 이외 인정마크 표시 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시험, 검사, 교정 등 분야 공인기관 인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험, 검사, 교정, 제품인증 등 분야 공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결함이 발견된 경우

2.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인정항목에 대해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명결함 B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 인정항목에 대해 공인기관 인정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가. 제2항에 따라 사용중지 처분을 받고 부여된 기간 중에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명결함 A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

경영체제 인정기구 인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제15조 관련)

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분야에 대해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가. 법 제15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 나. 법 제15조제3항제5호의 경우로 인정기준 위반 사항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 다.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 분야에 대해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가.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나.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다.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라. 법 제15조제3항제5호의 경우로 인정기준 위반 사항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명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5]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제17조 관련)

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분야에 대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가. 법 제17조제4항제2호의 경우로 지정기준 위반 사항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 분야에 대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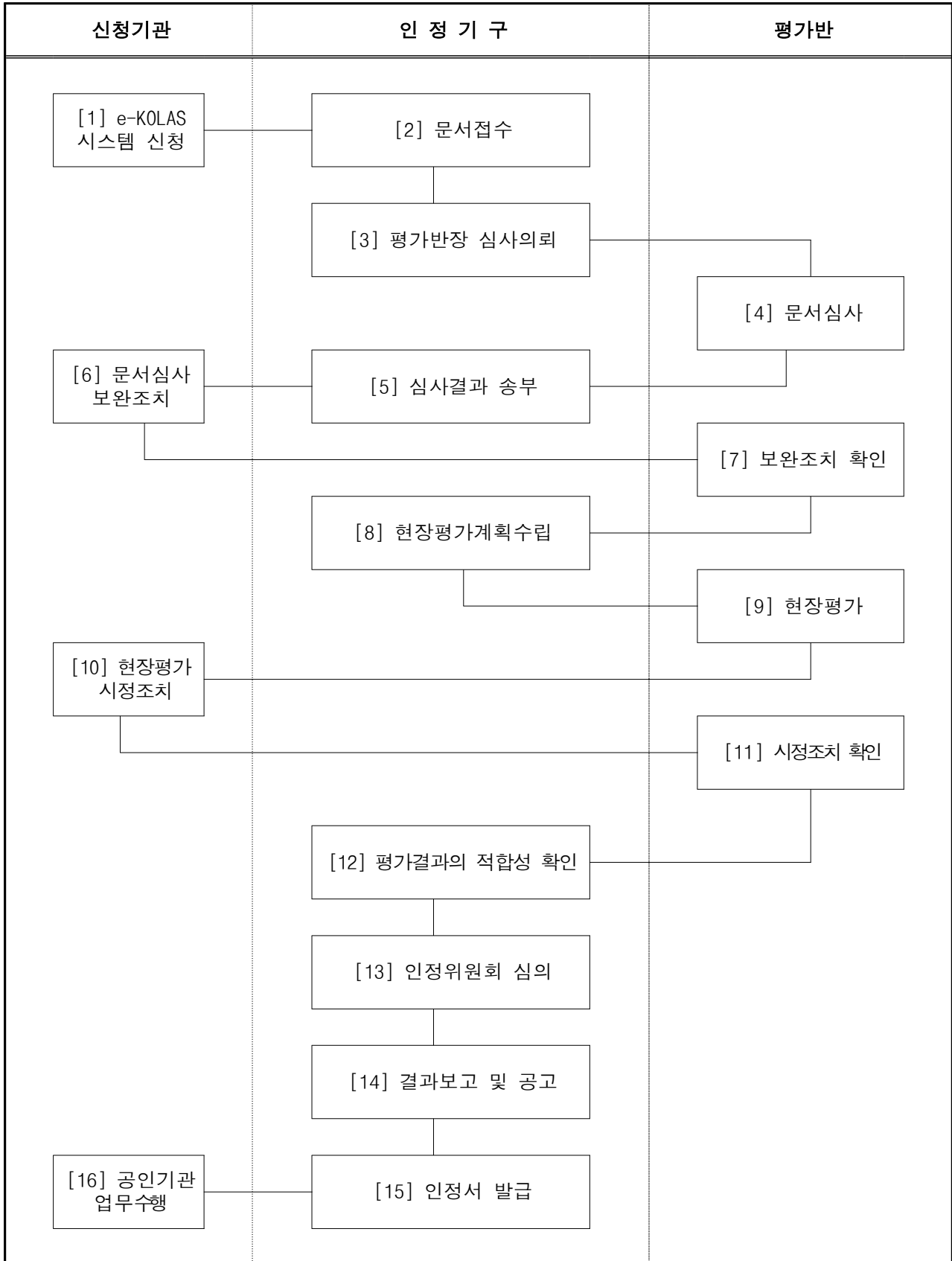
나. 법 제1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 인 기 관 인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90일
☐ 교정 ☐ 시험 ☐ 검사 ☐ 제품인증 ☐ 숙련도시험운영 ☐ 메디컬시험 ☐ 표준물질생산				
☐ 신규 ☐ 인정범위확대 ☐ 갱신				
기 관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사업장 소재지	우 * 사업장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주요활동이 있는 모든 소재지를 기입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신청목적				
신청분야	별첨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23조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수료
1.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2. 인정신청 분야 3.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4.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모든 자료와 문서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정신청서 및 수수료(정부수입인지)는 별도제출)				50,000원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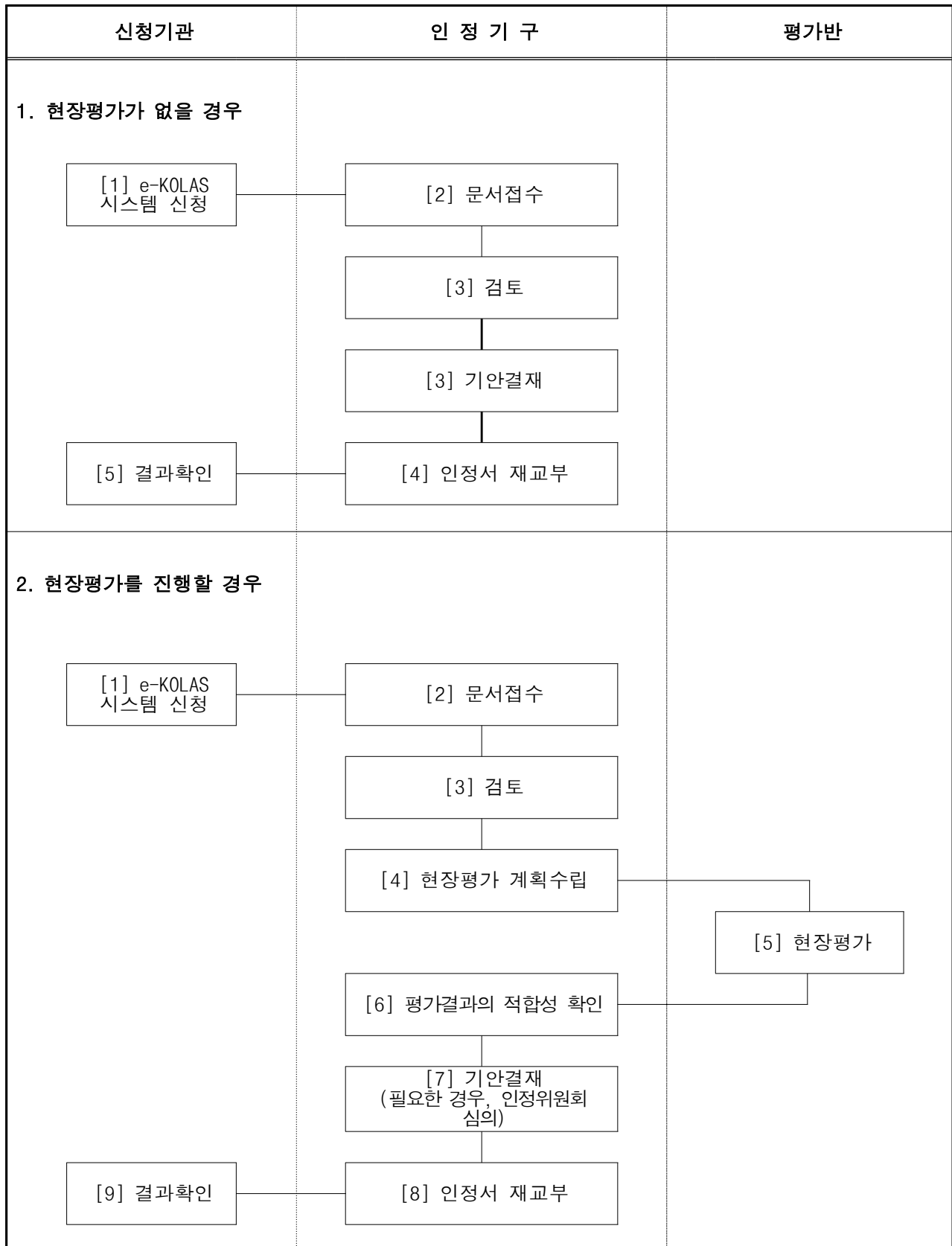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 교정 ☐ 시험 ☐ 검사 ☐ 제품인증 ☐ 숙련도시험운영 ☐ 메디컬시험 ☐ 표준물질생산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사업장 소재지	우: * 사업장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주요활동이 있는 모든 소재지를 기입 (소재지 작성시 * 문구 삭제)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사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사항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인정서(분실시는 제외) 2.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동의서 제출) * 모든 자료와 문서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다만, 인정신청서 및 수수료 (정부수입인지)는 별도제출)				20,000원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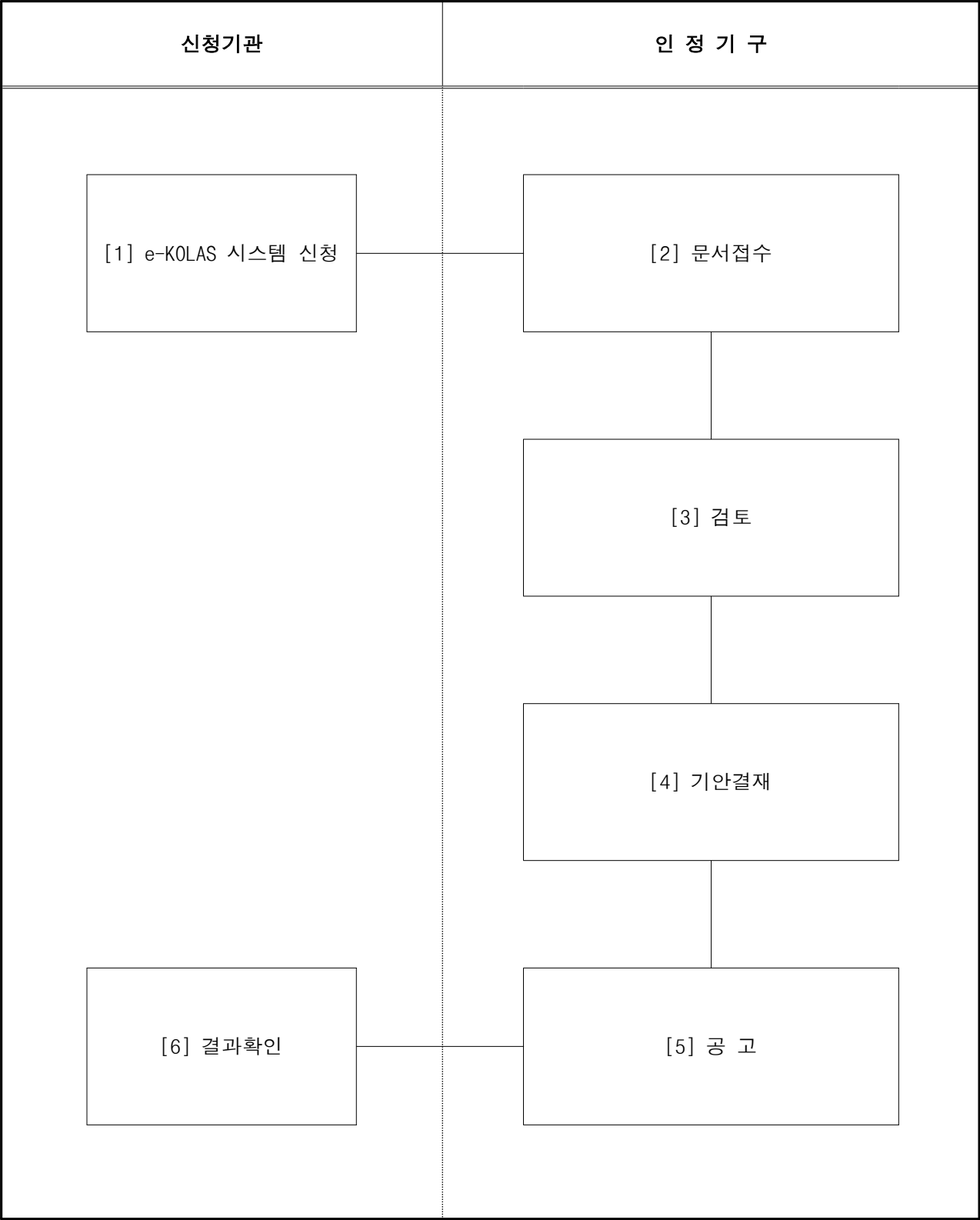
(뒷면)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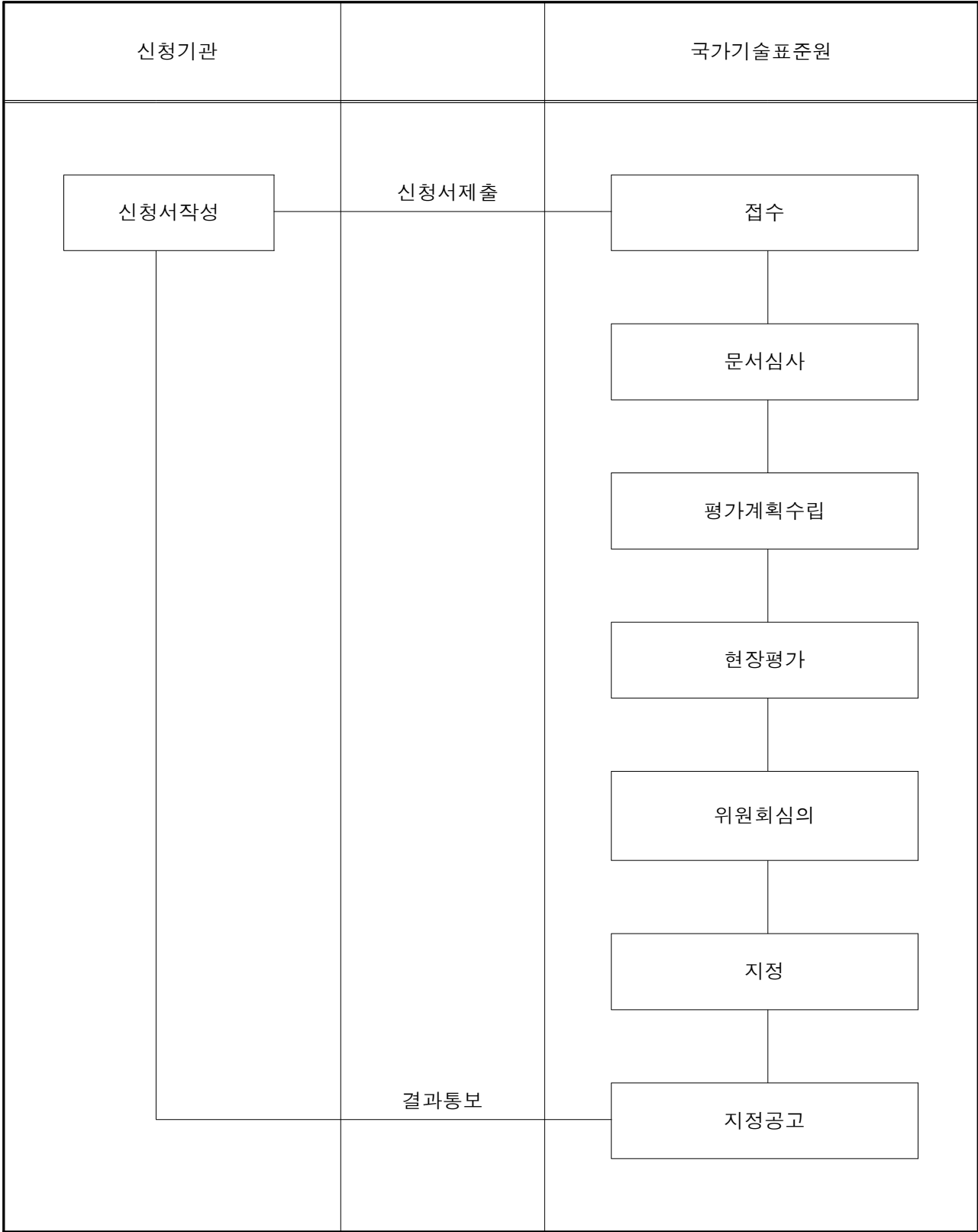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신규 ☐ 추가 ☐ 갱신)			처리기간
			90 일
기 관 명	국문 : 영문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국문 : 영문 :	법인등록번호	
주 소	국문 : (우) 영문 :	전화 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국문 : (우) 영문 :	전화 번호	
신청분야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직원 현황(학력, 경력, 교육내용 등),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각 1부 2.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1부 3. 교육시설 현황 1부 4. 과정별 운영계획(강사 및 커리큘럼운영 등) 1부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